

2022. 7. 29. 개정

## 납부자 자동이체 약관

### 제1조(약관의 적용)

납부자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자(이하 “납부자”라 한다)와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(신청, 변경 및 해지)

- ① 납부자가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,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자동이체(신규, 변경, 해지)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납부자자동이체를 변경,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 전 제2영업일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.

### 제3조(입금가능 예금종목)

-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(이하 “납기일”이라 한다)에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(이하 “입금은행”이라 한다)의 지정계좌(이하 “입금계좌”라 한다)로 입금이 됩니다.
- ② 입금계좌는 당좌, 가계당좌, 보통, 저축, 자유저축,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 이어야 하며, 이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납부자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### 제4조(영업일)

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.

1.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
2. 토요일
3. 근로자의 날

### 제5조(출금일 및 입금일)

납부자 출금계좌에서 납기일(고객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,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)전 제1영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### 제6조(이체금액의 인출 및 과실책임)

- ① 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.
- 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(잔액 증명서 발급, 연체, 법적 지급제한 등)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,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(납부자 자동이체의 경우 고객 교부용장표에 부분출금 불가 내용 기재하는등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.)  
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

### 제7조(출금우선순위)

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에서 여러 건(카드대금결제, 어음수표대금결제, 타 자동이체 등)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<별첨>자동이체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### 제8조(입금불능시의 처리)

- ① 입금계좌 부재(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), 잔액증명서 발급, 입금한도 초과, 법적제한,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.

② 입금계좌 부재,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하며, 이 경우 은행은 납부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.

### 제9조(이용수수료)

이용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하며,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.

### 제10조 (계좌이동서비스)

-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.
-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③ 납부자는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④ 납부자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.

### 제11조(약관의 변경)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 기존 납부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납부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### 제12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

-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

### 별첨.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

- 1)요구불간자동이체
- 2)여신상환
- 3)여신이자수입
- 4)하나카드자동이체
- 5)지로자동이체
- 6)CMS자동이체
- 7)CMS자동이체(당일 출금)
- 8)아파트관리비(금융결제원, 이지스효성)
- 9)월부금자동이체
- 10)편뱅킹자동이체
- 11)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
- 12)일일상환서비스원금
- 13)일일상환서비스이자

※ CMS자동이체(당일출금) 업무는13시에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동이체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.

※ 펌뱅킹자동이체는 업체에서 출금의뢰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사정에 따라 자동이체우선순위가 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와 바뀔 수 있습니다.

※ 납부자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 파일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20:00 에 1회만 처리되며, 부분이체는 불가합니다.

※ 18시 이후 입금시 자동이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※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부칙<제정>

이 약관은 2016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

부칙<1>

이 약관은 2017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칙<2>

이 약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